

[서식 예]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

소 장

워 고 ㅇ ㅇ ㅇ

피 고 1. 김 △ △

19○○년 ○월 ○일생 등록기준지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주소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) 전화 ○○○ - ○○○○

2. 정 \triangle

1900년 0월 0일생 등록기준지 00시 00구 00길 00 주소 00시 00구 00길 00 (우편번호) 전화 000 - 0000

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 정△△와 망 정□□(주민등록번호 : 000000-0000000, 등록기준지 : 00시 00구 00동 00) 및 피고 김△△ 사이에는 각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

청 구 원 인

- 1. 피고 김△△과 소외 망 정□□는 부부사이였고, 원고는 동 부부의 7남매 중 차남이며, 피고 정△△는 위 부부사이의 차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입 니다.
- 2. 하지만 피고 정△△와 피고 김△△, 소외 망 정□□와의 사이에는 각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, 단지 위 정□□의 4촌 형수인 박□□ 가 성명불상인 피고 정△△를 입양하려 할 때 피고 정△△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박□□가 남편 없이 혼자 생활하던 관계로 출생신고를 하기 곤란하여 위 피고 김△△와 소외 망 정□□가 대신 동인들간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.
- 3.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이 잘못 신고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
 1.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(망 정□□)
 1. 갑 제3호증 사실확인서(4촌형수 박□□)
 1. 갑 제4호증 인감증명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1통1. 소장부본2통1. 납부서1통

 20 ○ ○ 년
 ○월
 ○일

 원
 고
 ○
 ○
 ○
 (인)

○ ○ 가정법원 귀 중



제출법원	※ 아래참조	관련법규	민법 제865조, 가사소송법 제26 ~ 28조
제기권자	 ・부(夫) 또는 처(妻) ・부(夫) 또는 처(妻)의 후견인, 유언집행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・처(妻)의 전부(前夫) ・자(子), 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・이해관계인 		
상 대 방	・부 또는 모・자(子)・검사		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불복절차 및 기간	· 항소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 ·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친생자관계 존부사유	1. 법원에 의한 부(父)의 결정(민법 제845조) 2. 자(子)의 친생부인(민법 제846, 848, 850, 851조) 3. 인지에 대한 이의(민법 제862조) 4. 인지청구(민법 제863조)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		

※ 제 출 법 원

- 1. 상대방(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)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
- 2.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